

2. 외국인 투자여건

가. 무역제도

(1) 개요

-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 의류품목, 의류 부속품, 목각, 가구 및 야자유 등이며, 전자제품(주로 반도체)이 총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제품 및 의류를 제조하는데 대부분 수입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감소가 제조업체의 생산용 원재료 수입 증가를 나타내기도 함.
- 필리핀의 높은 수입 의존도는 환율을 실질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수입품을 국내상품보다 더 저렴하게 만든 1980년대의 통화정책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목 가격은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필리핀의 주요 수출시장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홍콩, 중국, 네덜란드, 독일, 한국, 태국 등임.
- 필리핀의 주요 수입품은 전자상품 및 광물연료, 운할유 및 관련 재료이며, 그 외 운송장비, 산업기계 및 장비, 철강, 화학제품, 통신장비, 곡류, 합성수지, 유제품 등이 있음. 주요 수입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한국, 홍콩 및 인도네시아 등임.

- 필리핀은 수입대체를 장려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였으나, 1981년부터 대외에 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하였음. 1996년 4월 옥수수, 설탕, 가금, 가축, 비료, 사료 및 사료 원료와 같은 주요 상품을 포함한 농가 생산물에 대한 수입 쿼터 등 모든 양적 제한을 철폐하였음.
- 양적 제한 대신 필리핀은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의정서(Uruguay Round Final Act)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최대한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2) 관 세

- 필리핀의 ‘관세법(Tariff and Customs Code)’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보통 종가세(ad valorem))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입품은 관세율이 낮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은 관세율이 높음.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및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Trade Area: AFTA)의 회원국으로서 필리핀은 2008년 말 농산물을 제외하고 모든 상품에 대해 최대 5%로 ASEAN 내 무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였고, 모든 비ASEAN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필리핀은 수입대체를 장려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1981년 관세개혁 프로그램(Tariff Reform Program) 및 수입자유화 프로그램(Import Liberalization Program)으로 무역정책을 전환하였음.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에 따르면, 1981년 이후 20년간 관세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평균 명목관세율이 1981년 42%에서 2003년 개혁 프로그램 종료시 6.1%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되었음.

— 이후 민감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이 2003년 1월까지 원료에 대해서는 3%, 완제품에 대해서는 10%, 2004년 1월까지 모든 나머지 생산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5%로 인하될 계획이었음.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세계적인 경쟁에서 국내 산업 및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1월에 개시되는 관세율 인하 계획을 연기하여, 최종 목표 관세율인 단일 5%를 시행하지 않았음.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필리핀의 단순 평균 관세율은 2007년 말 7.82%에서 2008년 말 6.9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1월 약 50%의 상품에 대해 0~3%의 최혜국 관세율이 적용되었고, 15%의 상품에는 5~7%, 24.8%의 상품에는 10~15%의 관세율이 적용되었음. 한편, 3%의 상품에는 20%, 6.83%의 상품에는 20%를 초과하는 관세율이 적용되었으며, 큰 변화 없이 동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완성차(CBU)의 수입은 비농산물에 적용되는 가장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CKD(Completely Knocked-Down) 부품 및 구성품에 대한 관세율은 승용차에 대해서는 3%, 다른 모든 차종에 대해서는 1%로 적용되는 반면, 최신 완성차에 대해서는 3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필리핀은 곡류, 가축, 돼지고기 및 가금류 고기, 설탕, 감자, 양파, 마늘, 커피와 같은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 2단계의 관세정책을 유지해 왔는데, 동 품목들은 관세할당물량(Tariff-Rate Quota: TRQ)을 적용받는 한편, 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Access Volume: MAV)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할당물량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었음.

·최소시장접근물량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2005년 6월에 종료된 반면, 신규 WTO 협정의 부재로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DA)가 여전히 현행 관세할당물량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농어업현대화법(Agriculture and Fisheries Modernization Act)¹⁾에 따라, 농어업 기업들은 모든 종류의 농어업 투입물,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1999년 1월 1일부터 118개 농어업 투입물, 장비 및 기계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음.

·당초에는 상기 품목들에 대한 무관세가 2003년 2월 8일까지 허용될 예정이었으나, 2004년 3월에 제정된 ‘공화국법 제9281호’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농장 장비, 투입물, 예비부품의 무관세 수입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였음.

— 2004년 1월 1일에 수립된 AFTA의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체제에 따라 별도의 관세감축 계획이 개시되었음. 공동유효특혜관세에 따른 관세율은 ASEAN 회원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데, 거의 모든 세번에 대해 관세율이 0%로 인하되었으

1) 공화국법 제8435호(Republic Act 8435)로서 공화국법 제9281호(Republic Act 9281)로 개정되었음.

나, 석유화학 합성수지, 일부 플라스틱 상품, 민감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음.

- AFTA 이행계획에 따라 필리핀은 2006년 1월에 상기 예외상품에 대한 관세를 5%로 인하하였고, 석유화학제품 및 일부 생산품에 대한 관세율도 공동유효특혜관세 관세감축 계획에 따라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7월 공동유효특혜관세의 관세인하 대상품목(Inclusion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품의 80%에 대한 관세가 0%로 인하되었음.
-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Technology Agreement)의 참여국으로서 필리핀은 2000년 1월부터 대부분의 정보기술 장비 및 투입물에 대해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07년 10월에는 ASEAN-중국 자유무역지대협정(ASEAN-China Free-Trade Area Agreement), 같은 해 11월에는 한-ASEAN 자유무역지대협정(ASEAN-South Korea Free-Trade Area Agreement)에 따른 필리핀의 관세 이행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발효되었음.
- 2008년 11월에는 같은 해 10월에 비준된 필리핀과 일본간 경제파트너십협정이 발효되면서 필리핀의 산업 및 농업 수출품의 거의 95%(금액 기준)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2008년 1월에는 원유 및 정유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국제 유가에 따라 조정되도록 규정한 행정명령이 실시되었음.
- 필리핀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데 재판매 또는 재사용을 위한 수입품에는 12%의 부가세가 부과되며,

관세청(Bureau of Customs: BOC)이 관세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총 가격에 수입관세, 물품세 및 여타 수수료(우편료, 보험료, 수수료 등)를 더하여 부가세가 결정됨.

· 필리핀은 2000년 1월 1일부터 WTO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품 가격의 결정 근거로 거래가격을 이용하고 있음.

— 1999년 통과된 ‘반덤핑법(Anti-dumping Act)²⁾에 따라,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 및 무역업자를 처벌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 따라 제조국가 내에서 판매되는 정상적인 물품가격과 수입자에게 판매된 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덤핑 관세로 부과될 수 있음. 1995년 2월부터 발효된 ‘공화국법 제7843호’에 따라, 덤핑상품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결정하는 3가지 지표로 바로 이전 3개월의 해당 월평균 수치 대비 판매량의 5% 감소, 판매가격의 2% 하락 또는 국내 생산량의 5% 감소 등이 있음.

· 특별위원회³⁾가 반덤핑 결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국이 현지 산업에 대해 덤핑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수출 보조금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필리핀은 보조금과 동일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특별관세는 필리핀 생산품에 대해 차별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됨.

2) 공화국법 제8752호(Republic Act 8752)

3) 재무부 장관이 동 위원회의 의장이며 상공부 장관, 노동고용부 장관 또는 농업부 장관 중 한 사람이 동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음.

— 1999년 통과된 ‘상계관세법(Countervailing Duties Act)’⁴⁾에 따라, 상공부(DTI) 또는 농업부 중 한 개 부처에서 원산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수입 생산물 또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필리핀에서 유사 품목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지지를 받으면 누구든지 해당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신청할 수 있음.

· 초기 조사중에 보조금을 받은 증거가 발견되면 상공부 및 농업부 장관이 보조금 추정액과 동일한 현금채권 형태로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세위원회가 실제 보조금 수혜 여부와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 여부를 결정하게 됨. 유사 상품 총 생산량의 최소 25%를 차지하는 국내 생산자들이 수입품에 대해 대항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동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WTO에서는 이러한 대항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외국 생산자 및 해당 정부 앞으로 조사 전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보조금에는 교부금, 대출금, 지분 투입, 대출 보증, 세금 면제, 상품 구매, 자금공여기관 앞 출연, 직접/간접소득 또는 가격 지지 등의 형태가 있음. 보조금 관련 대항조치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관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국세심판소 앞으로 항소할 수 있음.

— ASEAN 산업협력(ASEAN Industrial Co-operation: AICO) 계획에 따른 특별관세 특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최소 2개의 ASEAN 회원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현재까지 승인

4) 공화국법 제8751호(Republic Act 8751)

받은 생산품의 대부분은 자동차 및 소비재였음. AICO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BOI)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함.

(3) 수입제한

- 정부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는 상품 가운데 쌀과 옥수수, 시안화나트륨, 페니실린 및 유도체, 석탄 및 석탄 유도체, 정유 석유제품, 폭약 제조용 화학제품, 살충제, 자동차 및 부품과 구성품 등이 있음.
- 수입 규제품목 및 규제기관의 전체 목록은 2009년 1월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발행한 외환거래규정 안내서(Manual of Regulation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의 부록 2에 있음. 동 안내서의 부록 3과 3.1, 필리핀 ‘관세법’의 Section 101에는 금지 수입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음.
- 금지 수입품에는 다이너마이트, 화약, 탄약 및 기타 폭약, 정부 전복 또는 법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지지하거나 신체상해 위협이 포함된 인쇄물, 포르노물, 마취약, 낙태 유발 약품 및 물질, 카드를 제외한 도박 장비, 복권 및 도박경마 마권과 해당 광고 및 추첨목록, 순도 또는 품질표시가 없는 귀금속 및 귀금속의 합금, 부정표시/불량 식품 또는 의약품, 마리화나, 양귀비, 코카인, 헤로인 또는 기타 마약류 또는 합성 의약품, 중고 의류 및 의복, 장난감 소화기(小火器) 및 폭약, 클로로플루오로카본 및 기타 오존파괴 물질(단, 오래된 장비 수리용으로만 2010년까지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국립식품청(National Food Authority: NFA)이 일반 쌀의 독점 수입자로서 옥수수의 수입에도 관여하고 있음. 민간 곡물상은 국립식품청이 발급한 수입허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고급 또는 특상 쌀을 수입할 수 있으며, 민감 농산물은 최소시장접근물량(MAV) 및 관세할당물량(TRQ)의 적용을 받음.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 약품 및 화장품은 식품의약국(Bureau of Food and Drugs)에 등록되어야 함. 식품의약국은 부정표시 및 불순품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되거나 판매용으로 내놓은 모든 미등록 수입 식품 및 의약품을 몰수할 수 있음.
- 농업부(DA)의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이 신선 과일 및 야채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음. 모든 수입 과일 및 야채는 식물산업국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검역 승인이 필요하며, 필리핀 수입자는 매 선적에 대해 검역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1999년에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농업 투입물 및 원료가 발표되었으며, 면세 수입 농업원료 관련 인센티브는 2015년까지 연장되었음.
- 관세청(BOC)이 모든 관세 평가, 분류 및 승인 역할을 전담하고 있음. 필리핀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물리적인 선적전 검사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으나, 모든 수입자 또는 대리인들은 공인된 부가가치시스템공급자(Value-Added System Provider: VASP)가 설치한 컴퓨터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그 다음에는 단일행정서류(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AD)라고 불리는 수입신고서가 관세청의 컴퓨터로 전송되어 자

동세관운영시스템(Automated Customs Operating System: ACOS)에서 처리됨. ACOS의 선택적 검사 시스템에 따라 모든 수입품의 약 70%는 세관검사가 생략되고, 세금 및 관세는 관세청(BOC)과 컴퓨터로 연결된 은행으로 바로 납부됨.

— ACOS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적물을 저위험(green or regular lane), 중위험(yellow lane) 또는 고위험(red lane)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위험의 선적물은 서류 검토, 고위험의 선적물은 항구에서 물리적 검사를 받음.

·저위험의 선적물은 서류나 물리적 검사 없이 통관하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되고, 고위험의 선적물은 통관하는데 4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많은 수입자들은 사실상 2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 관세청은 2002년 소위 ‘초저위험(super green lane)’을 추가하였는데, 관세 및 세금 납부 측면에서 최고 수입업체 1,000개 중에서 선발되어 공인받은 100여개 업체가 이 레인에서 통관절차를 받을 수 있음. 동 업체들은 수입 선적물의 일상적인 서류 검사 및 물리적 검사를 받지 않고, 단지 수입품을 신고하기만 하면 됨.

·정부는 공인받은 업체들 중에서도 어느 업체나 공장을 감사할 수 있으며, 수입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적발된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음. ‘초저위험’을 이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약 2,000달러의 일회성 회비 및 매월 요금과 별도로 거래건별로 2,500페소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됨.

· ‘초저위험’이 악용되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초저위험’의 모든 수입 통관수속은 전자자료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며, 관세청은 모든 세금과 관세가 전액 납부되고, 선적물에 규제 또는 금지상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음.

— 수입업체 또는 중개인은 필리핀 항구에서 통관수속 처리기관 (Entry Processing Unit)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에는 ① 세관통과 및 내국세 수입신고서(Entry and Internal Revenue Declaration: IEIRD)(BC Form 236), ②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③ 상업송장, ④ 포장명세서, ⑤ 식품약품국(Bureau of Food and Drugs) 면허 등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음.

— 수입품에 대한 서류 검사 및 물리적 검사 후 검사관이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컴퓨터로 송부하면, 다음으로 ACOS가 인가 상업은행에 납부되어야 할 관세 및 세금을 계산함.

— 2000년 1월 1일에 발효된 ‘관세행정명령 제2/99호(Customs Administrative Order 2/99)’에 따라, 거래가격이 수입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이는 필리핀의 WTO 의무사항 중 하나였음.

— 수입업자들은 많은 경우에서 상품의 평가액에 대한 분쟁이 수입품의 선적절차를 지연시킨다고 항의를 해왔는데, 이것은 선적물을 검사하고 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1990년대 필리핀 정부가 계약했던 스위스의 선적전 검정회사인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⁵⁾가 이전에 제공했던 평가액 자료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못했기 때문임.

- 관세청은 필리핀의 각 항구에 가격분류 검토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분쟁을 처리하는 항소기관을 분산시켜 왔음. 그러나 무역업자들은 이러한 체제가 검사관 및 감사자들의 재량권을 확대시켜 부정부패 및 밀수 기회를 늘리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부패한 검사관들에 대해 수입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
- 필리핀에 소재한 상업은행들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 송금, 신용장,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청산결제방식(Open Account: O/A), 지급인도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D/P) 등의 방식으로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외화를 매도할 수 있음.
- 대금 지급을 위한 외화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수입업자가 외화 보통예금계좌의 자체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수입품 또는 외화대금 지급 없이 해외에서 공급업체가 보낸 수입품과 위탁 판매를 전제로 들어온 수입품 등이 이에 해당됨.
- 2004년 4월 ‘관세사법(Customs Brokers Act)’⁶⁾은 필리핀의 관세중개업무(관세사 업무)를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관세청

5) Société Générale de Surveillance(SGS) :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검사회사로 1878년에 설립되어 세계 40여 개소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에서 정부기관을 대행하여 수출입 화물의 검사, 관세 대상 가격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6) 공화국법 제9280호(Republic Act 9280)

과의 모든 수출거래를 위해 전문 관세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3월에 발효되었음.

·기업들이 사내 관세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법안이 하원 승인을 거쳐 2008년 1월 상원에 제출되었으나, 동 하원 법안이 2009년 2월 국무위원회(Committee on Civil Service) 및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에 계류중으로 통과되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됨.

— 수입상품의 라벨링과 표시에 대한 요건에 따라, 상품라벨은 원산지, 브랜드, 상표 또는 상표명, 물질 또는 화학성분, 순 중량 및 크기, 제조업체 또는 재포장업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밀수 방지를 위하여 허위 표시 또는 부적절한 라벨링에 대해 최고 5,000페소의 벌금과 6개월 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선적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5%의 표시 증가세(ad valorem marking duty)가 부과됨.

— 수리, 가공 또는 재조정을 위해 필리핀으로 들여오거나 완성시 재수출하기 위하여 들여온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됨. 그러나 해당품목이 수리 또는 가공 후 재수출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확인된 관세, 세금 및 기타 수수료의 1.5배에 달하는 보증서를 수입신청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함.

— 2007년 7월 상공부(DTI)의 의류 및 직물 수입업무 특별위원회

(Garments and Textile Import Services Special Committee)는 의류 수출업체들이 보세창고를 통해 들여온 원료 수입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을 폐지하였음.

(4) 수출세

- 부가가치세 등록기업의 수출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출품에 대해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세금공제 또는 세금환불을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서비스 수출에 대해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규정에 따라 수출대금을 외화로 송금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미등록 기업들은 수출 판매에 대해 모든 수출관세를 면제 받음.

(5) 경제지대 및 자유 무역항

- 1972년에 발효된 ‘대통령령 제66호’에 따라 수출가공지대(EPZ) 소재 기업들 앞으로 많은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특별경제지대법’에 따라 수출가공지대에 더 많은 인센티브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음.
- 1992년 ‘기지전환개발법’에 따라, 수빅만 자유무역항 내에 특별경제지대(SEZ)가 설립되어, 수빅만 소재 기업들 앞으로 ① 동 지대로 원료 및 자본 설비의 면세 수입, ② 총소득에 대한 5% 세금을 제외한 모든 국세 및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수빅만은 별도의 관세영역으로 관리되고 있음.

- 2007년 3월 의회는 동 인센티브를 클라크 특별경제구역, 캄프 존 헤이, 포로 포인트 및 모롱 등 다른 4개의 특별경제지대에 소재한 기업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음.

- 수출가공지대 및 특별경제지대 이외에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에 등록된 150개 이상의 민간운영 경제지대가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민간부문이 경제지대 또는 공업지대, 수출가공지대,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광휴양중심지 등을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 민다나오 섬의 삼보앙가 시티(Zamboanga City)에 소재한 삼보앙가 시티 경제지대 및 자유항(Zamboanga City Economic Zone and Freeport)과 산타아나(Santa Ana) 시, 카가얀(Cagayan) 주 및 인근 섬들을 포함하는 카가얀 특별경제지대 및 자유항(Cagayan Special Economic Zone and Freeport) 등 2개의 민간운영 경제지대는 필리핀 경제지대청의 감독에서 독립되어 있으며, 동 지역의 투자자들에게도 필리핀 경제지대청이 제공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인센티브들이 제공됨.

(6) 수출 규제

- 일부 품목의 수출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지 또는 규제 수출품에 대한 정보는 수출지원 네트워크(Export Assistance Network: ExportNet)에서 입수할 수 있음.

-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선정된 동식물상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으며, 동식물상의 수출에 대한 주요 규제기관은 환경 천연자원부(DENR)임.

- 환경천연자원부 산하 산림관리국(Forest Management Bureau) 이 과학 또는 실험 용도를 제외하고 홍수림 식물 및 생산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통나무, 기둥, 말뚝과 재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 환경천연자원부의 야생보호지역국(Protected Areas and Wildlife Bureau)은 과학 또는 실험 용도를 제외하고 다양한 희귀종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농업부(DA)의 식물산업국은 모든 식물, 조립 원료, 해충 및 곤충을 번식시킬 수 있는 식물 생산물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과학 또는 실험 용도를 제외하고 부리(buri) 종자 및 묘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섬유산업개발청(Fiber Industry Development Authority)은 식물 원료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동물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은 모든 동물, 동물성 생산품 및 동물성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 수산자원국(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은 과학 또는 실험 목적을 제외하고 일부 유형의 어류 수출을 금지하고, 기타 다양한 해양자원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 농업부의 일부 기업들이 특정 농산물 수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곡물 및 곡류 부산물 수출은 국립식품청(NFA)의 승인이 필요함.

- 필리핀 코코넛청(Philippine Coconut Authority)은 과학 또는 실험 목적을 제외하고 완전히 자란 코코넛 식물 및 묘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코코넛 부산물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 설탕규제관리국(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은 설탕 및 당밀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
- 상공부(DTI)는 일부 생산물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상공부의 국제커피기구(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가 모든 커피 수출을 통제하는 인증기관이고, 투자청(BOI)은 시멘트, 벽돌 및 동정광의 수출을 규제함.
- 의류섬유수출청이 필리핀에서 생산된 의류 및 섬유, 카펫, 기타 천연 및 합성섬유의 수출을 규제하며, 상공부의 지역가사단체(Regional Domestic Group)가 필리핀의 가내공업이 사용하는 원료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의 수출은 운송통신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내무자치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와 필리핀 국립경찰청(Philippine National Police)의 화기 및 폭발물실(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이 모든 화기, 탄약 및 폭발물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필리핀 법정 화폐(지폐 및 동전), 수표, 우편환, 필리핀 소재 은행에서 10,000페소 이상을 페소화로 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환어음뿐만 아니라 소규모 광산에서 나온 금 및 사금의 수출도 규제하고 있음.

- 알바니아, 앙골라, 에티오피아, 라오스, 리비아, 몽고, 모잠비크, 미얀마, 니카라과, 북한 등의 국가에 대한 수출은 상공부의 대리 기관인 필리핀 국제무역회사(PITC)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정부가 1998년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필리핀 중앙은행의 수출 신고서 발급 권한이 상공부로 이관됨에 따라, 상업은행과 역외금융기관이 수출신고서를 더 이상 발급 및 등록할 수 없게 되었음.
- 수출업자들은 ASEAN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계획 및 국제커피기구 규정에 따라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화물 운송업자 및 해운업자가 규제 수출품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 앞 모든 서류 제출 및 허가를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줄 수 있음. 2006년 8월 정부기관들에게 수출승인, 검사, 허가, 증명 및 기타 문서제출 요건들에 부과된 수수료 및 요금(비용)을 폐지할 것을 지시하였음.

(7) 수출보험 및 신용

- 필리핀 무역투자개발공사(Trade and Investment Development Corp. of the Philippines: Tidcorp)는 정부기관으로 개발 목적으로 필리핀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의 외채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를 위한 보험커버(insurance cover)를 제공함.
- Tidcorp의 수출신용부문인 필리핀 수출입신용국(Philippine Export-Import Credit Agency: Philexim)이 필리핀 수출업

체 앞으로 보증, 보험, 신용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Philexim은 선적전 수출금융보증(Pre-shipment Export Finance Guarantee: PEFG)에 따라 대출원금 및 이자의 90%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해당 대출건은 단일 수출거래에 대한 대출인 경우는 900만 페소, 1년 동안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한 회전대출인 경우는 2,000만 페소를 초과할 수 없음.

·은행들이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담보로 보통 시장이자율로 대출이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Philexim은 연 2%의 보증료와 대출금의 보증부분에 대해 0.25%의 퍼실리티 수수료(facility fee)를 부과하고 있음. 회전한도 대출에 대해서는 연 1%의 보증료와 보증부분에 대해 1%의 퍼실리티 수수료가 부과됨.

·내국인이 최소 51%의 지분을 보유한 수출업체가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업체가 직접 Philexim 앞으로 동 보증을 신청할 수 있음. 대출은 인가 상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은행은 해당업체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담보가 불충분할 경우 은행이 Tidcorp 또는 Philexim 앞으로 보증을 신청함.

— 소기업보증금융공사(Small Business Guarantee and Finance Corp.: SBGFC) 또는 소기업공사(Small Business Corp.)는 적격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들의 대출을 보증해주고 있음.

·SBGFC는 자산, 운영자금, 부채 차환 또는 금융리스 용도로 참가은행들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개의 자체 보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차주기업은 내국인 지분이 최소 60%이어야 하고, 부채비율 (debt-to-equity ratio)을 준수하여야 하며, 바로 다음 해에 소득을 발생시켜야 함.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적격 대출금액은 10만~2,000만 페소이며, 대출금액이 부동산 또는 동산 등 확실한 담보물건으로 담보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담보될 경우, 참가은행이 SBGFC에 보증을 신청함. SBGFC는 도매 또는 소매대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음.
- 필리핀 토지은행(Land Bank of the Philippines) 및 필리핀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은 모두 국영은행으로 수출업체를 위한 특별신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면, 필리핀 토지은행은 중소수출업체 앞 특별금융지원 (Special Financial Assistance to Small and Medium Exporters: SFA-SMEX)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재할인제도(rediscounting facility)에 따라 달러화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하여 수출업자는 거래은행 앞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구매요청서를 대출신청 근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는 대출금을 즉시 페소로 환전하여 유리한 환율로 고정시킬 수 있음.
- 2007년 1월 필리핀 정부와 민간부문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수출개발위원회(Export Development Council)가 중소 수출업체들의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8,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촉진기금(Export Promotion Fund)을 조성하였음.
- 고부가가치 상품을 신흥시장에 수출하거나 총 사업비용의 최소

20%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동 기금에 지원할 자격이 있으며, 사업제안서를 수출개발위원회 또는 지방의 수출업협회인 필리핀 수출자연합(Philexport)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

- 외국계 및 국내은행 모두 특별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통상 은행들은 신용장 방식으로 1년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받는 상품과 장비의 수입 및 수출의 100%까지 변동 이자율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민간의 필리핀 수출자연합이 대출 및 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평가하고 보증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출금융 및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음.

나. 외환제도

(1) 개요

- 2009년 1월 외환거래규정 매뉴얼에 따라, 필리핀 거주자(필리핀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 포함)는 외환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외환은 최소한의 규제요건에 따라 필리핀 내로 유입되거나 필리핀 밖으로 유출될 수 있음. 외국기업은 외화 수령액을 폐소로 환전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기업의 임원들은 필리핀에서 모든 보수를 외화로 보유할 수 있음.
- 필리핀 정부는 기업들이 배당, 이자, 대출원금 및 외국인투자 자본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 현지 상업은행은 Foreign-Currency Deposit Unit(FCDU)에서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주요 외국계 은행들은 역외금융 부서에서 수입 또는 수출신용장, 기계, 장비 및 예비부품을 위한 자금 용도로 비은행 거주자(외국인 거주기업 포함)에게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 2000년 1월 이후 금융통화위원회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최소 90일의 의무 보유기간을 부과해 왔음. 폐소화 자산에 자금을 투입한 외국인투자자들은 해당 자금을 최소 3개월 동안 필리핀에 보유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금의 본국 재송금을 위해 외화를 은행에서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이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폐소화를 달러화로 재환전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암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하여야 함. 동 규정은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중 달러화 대비 폐소화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끼쳤던 차액거래를 위한 달러화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것임.
- 폐소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2007년 여러 차례에 걸쳐 외환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함에 따라, 2007년 12월 이후 거주자들은 은행에서 무역 외적인 목적으로 30,000달러까지 외화를 관련자료 없이 매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외에 2007년 12월에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 및 등록 없이 가능한 해외투자한도가 투자자당 연간 3,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고, 보험회사, 뮤추얼 펀드 및 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필리핀 중앙은행 앞으로 한도 상향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2009년 2월부터 거주자의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 및 이익은 국내로 송금되어야 하며, 자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도하여 폐소화로 환전하여야 함. 그러나 동 자금의 수령일로부터 2은행영업일 이내에 해외에서 재투자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금이 국내로 송금될 필요가 없음.
- 한편, 은행은 수입대금의 선지불을 위해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10만 달러까지 외화를 매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07년 12월 필리핀 중앙은행은 D/A 및 O/A 계약에 따른 수입어음 만기를 30일에서 360일로 연장하였음.
- 10,000달러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한 외화를 필리핀 내로 유입하거나 필리핀 밖으로 유출시킬 경우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6년 2월 필리핀 중앙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조치로서 여행자 수표 또는 기타 수표, 어음, 지폐, 우편환, 채권, 예금증서 및 증권과 같이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증서까지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음.
- 1996년 필리핀은 국내의 모든 법적 채무를 금이나 필리핀 통화로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1950년 ‘통일통화법(Uniform Currency Law)’을 폐지하고 법화로서 다른 통화의 사용을 허용⁷⁾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 및 채권자들은 선택한 통화로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일부 보험회사들이 달러표시 보험증권을 취급해왔음.

7) 공화국법 제8183호(Republic Act 8183)

(2) 자본금의 재송금

- 필리핀 중앙은행(BSP)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인가대리은행(AAB)인 수탁은행(custodian bank)에 적법하게 등록된 모든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전액 본국 재송금이 허용됨. 현지은행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 없이 사업철수에 따른 투자자금을 외화로 송금할 수 있음.
- 자본금의 본국 재송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직접적인 지분투자의 경우, 상업은행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등록 서류 및 투자철수 증명이 제시되면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자본금을 재송금할 수 있음. 그러나 은행이 투자를 철수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감독조사과(Supervision and Examination Section),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사무소(Office of the Insurance Commissioner), 석유회사는 에너지부의 에너지산업관리국(Energy Industry Administration Bureau)의 허가가 필요함.
 - 정부 또는 상장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금액의 필리핀 국내 송금을 처리했던 수탁은행 또는 중개인이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직접 투자자금을 투자자의 본국으로 재송금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투자가 필리핀에서 최소 3개월 동안 유지되지 않았다면 수탁은행 또는 중개인이 재송금을 처리할 수 없음.
 - 다른 은행 또는 중개인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본국으로 재송금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송금은행 또는 매각중개인이 필리핀 중앙은행에 등록된 원래의 투자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필리

핀 중앙은행의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원 중개인의 판매송장이 재송금의 보완서류로서 요구됨.

- 보류중인 재투자 또는 재송금, 투자철회 이익은 일시적으로 어느 은행이나 예치할 수 있으며, 해당 예치은행은 필리핀 중앙은행 앞으로 동 예금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세금 공제후 이자를 포함한 투자철회 이익의 최종적인 재송금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3) 이익 송금

- 필리핀 투자에서 외화로 벌어들인 모든 이익 및 배당은 즉시 전액 송금이 가능하며, 원래 투자가 필리핀 중앙은행(BSP) 또는 수탁은행에 등록이 되었다면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또한 송금 가능한 이익 또는 배당의 잠정적 투자 또는 재투자로부터 얻은 수입도 실제 송금일의 은행간 기준환율로 환전하여 전액 송금할 수 있음.

- 이익 송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차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2009년 2월 거주자들은 이익을 송금하기 위하여 필리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기관들로부터 외화를 매입할 수도 있게 되었음.

· 또한 거주자들은 필리핀 중앙은행 등록 및 기타 서류의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이익 송금 목적으로 은행 등에서 외화를 매입할 수 있음.

(4) 대출금 유입 및 상환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채무원리금 상환 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원리금 상환을 조절하기 위하여 외화대출을 규제하고 있음. 1992년 외화 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나, 1994년 민간부문 차입의 급증,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 및 이에 따른 폐소화의 평가절상 등으로 인하여 선승인 요건을 다시 적용한 바 있음.
- 다음의 민간기업의 대출은 필리핀 중앙은행 국제부(International Department)를 통해 선승인 및 등록이 필요함.
 - 공공부문(즉, 정부 기업 및 정부 금융기관)이 보증한 대출
 - 필리핀에서 영업하는 은행이 발행한 외화보증서로 담보되는 대출
 - 필리핀 은행에서 외화로 원리금이 상환되어야 하는 대출. 대출 서류의 서명 및 대출금액의 인출 전에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 필요
- 민간기업이 역외에서 연간 최소 총 1,000만 달러를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기연도의 중장기대출을 위해 매년 9월말까지 국제부를 통해 외화차입계획을 등록하여야 함.
 - 필리핀 중앙은행에 제출하는 차입계획에서 제외되는 중장기대출은 추가 10%의 수속비(processing fee)를 부담하여야 하나, 단기대출을 위한 외화차입계획은 제출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민간부문의 단기 외화대출은 여전히 인출일로부터 10은행 영업일 이내에 국제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중장기 외화대출은 대

대출금의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되어야 함.

- 국내 및 수출시장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입 투입물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만 대출금이 사용된다면,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업체, 국내시장을 위한 제조업체들(석유 및 공공사업체 포함) 앞으로 제공되는 단기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한 대출의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은 투자위원회(BOI)에 등록하거나, 투자우선계획(IPP) 또는 중기공공투자 프로그램(Medium-Term Public Investment Program)에 포함된 사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의회 또는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의해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수출지향기업을 선호하고 있음.
- 단기대출은 국내 사업의 외화 소요자금으로만 이용될 수 있고, 중장기 외화대출은 외화비용 및 국내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①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이 수출지향 또는 외화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필리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수출로 증명되는 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② 대출기간 동안 외화유출이 없는 경우, ③ 대출금이 정부, 정부 소유 또는 통제 기업, 또는 정부 금융기관의 보증으로 담보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금을 제외하고 해당사업의 총 폐소화 소요자금의 100%까지 중장기 외화대출로 조달할 수 있음.
- 국내비용 용도로 조달된 외화대출금은 국내로 송금되어 은행에서 폐소화로 환전되며, 외화비용 용도의 대출금은 국내로 송금될 필

요 없이 직접 역외로 또는 비거주 공급자나 수익자에게 지급될 수 있음.

- 장기대출의 대출기간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대출기간이 반영되며, 대규모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더 장기의 부리기간 및 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필리핀 중앙은행에 등록된 대출금에 대한 원금, 이자 및 기타 수수료의 지급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선승인 없이 상업은행을 통해 송금될 수 있음.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요함.
 - 은행에서 매입한 외화로 외화대출 원리금의 조기상환 및 상환 가속화
 -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금의 상환
 -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수수료 및 요금
 - 공식적인 리스케줄링에 포함된 대출금
- 외환 중개인과 같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비은행기관들은 2005년 1월부터 미등록된 대출금 상환을 위한 외화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음.

(5) 로열티 및 수수료의 송금

- 면허계약이 '지적재산권법'의 제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로열티 및 수수료의 송금이 허용되며, 면허계약에 1~2개 정도의 제약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면허계약은 특허청의 기록정보 기술이전국의 승인을 받고 등록되어야 함.

(6) 무역대금 결제

- 수출자가 외화소득을 환전할 경우 적용환율은 거래시점에 필리핀 거래시스템(Philippine Dealing System)에서 통용되는 시세를 근거로 함. 은행이 수입결제 만기일 전에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보고할 경우, 수입결제를 위한 외화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선승인 없이 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음.
- 2004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는 D/A 및 O/A 계약에 따른 수입에 대하여 필리핀 중앙은행 앞 등록요건을 폐지하였음. 2007년 12월 필리핀 중앙은행은 D/A 및 O/A 계약에 따른 수입어음 만기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일자로부터 기존 30일에서 360일로 연장하였음.
- 2007년 12월 외환 자유화 조치에 따라, 은행은 수입대금 선지급을 위하여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10만 달러까지 외화를 매각할 수 있게 되었음. 동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입대금을 선지급하기 위하여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음.

다. 금융제도

(1) 개요

- 필리핀의 자본 및 주식시장은 여전히 은행시스템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자금조달은 주로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민간기업이 필리핀 금융시장의 최대 대출수요자인 정부

와 자금조달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필리핀의 은행시스템은 중앙은행인 Bangko Sentralng Pilipinas (BSP)의 엄격한 규제 덕분에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도 비교적 견실하게 유지되어 왔음.

·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자산 정리, 자본 축적 또는 합병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강화하도록 은행들을 장려함으로써 보다 건전한 금융기관으로 육성해 왔음.

· 결과적으로 필리핀 현지은행의 무수익여신(Non-Performing Loan: NPL) 및 불량자산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왔으며, 자기자본비율(capital adequacy ratio)도 규정 및 국제적 표준 이상을 유지해왔음.

— 최근 몇 년간 필리핀 은행들은 손익이 개선됨에 따라 대출을 더 많이 하도록 장려되었으나, 서구 금융시장은 신용규제로 정체된 모습을 보여 주었음. 필리핀 은행부문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대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은행에서는 단기대출 및 무역금융의 이용이 용이하고, 중장기대출은 은행에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개발기관에서 받는 것이 더 용이함. 국영 필리핀 개발은행 및 필리핀 토지은행이 주요 중장기 대출기관이며, 보통 내국인이 최소 60%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들만이 이용할 수 있음.

- 단기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우량고객에게 91일물 국채에 1.5~3% 포인트의 스프레드를 가산하고, 비우량고객에게는 91일물 국채에 5~8% 포인트의 스프레드를 가산한 대출 이자율을 적용함.
- 상업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담보 없이 중소기업 앞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영은행과 상공부(DTI)의 소기업공사 등 정부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정부 금융기관들은 외국 정부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등과 같은 국제개발은행의 양허성 대출에도 관여하고 있음.
- 우수 통신기업 및 거대 부동산 개발기업 등 대기업들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으나, 2009년 초에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음.
- 필리핀 중앙은행은 필리핀의 전반적인 외채원리금 상환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외채 차입을 계속 감독 및 규제하고 있음. 일부 민간부문의 대출은 만기, 외채원리금 상환을 위한 외화자금 조달원 등에 관계없이 필리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험회사도 기업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나, 단기 정부채권, 현지 우량 회사채 및 우량주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유가증권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대부분 피해를 입지 않았음.

- 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 IPO) 시장은 2007년에 9개 기업의 기업공개로 총 186억 페소를 공모한 것에 비해, 2008년에는 단 2개 기업의 신규 상장으로 총 100억 페소를 공모하는데 그쳤음. 2009년에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음.
- 외국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필리핀 소재 은행에서 차입할 경우에는 주로 자국 은행들과 거래를 하고 있음.

(2) 단기자금

- 텀론⁸⁾ 및 단기 약속어음이 가장 일반적인 단기자본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신규 기업들에게는 여신심사가 까다로운 편으로 주요 유니버설은행⁹⁾ 및 투자은행들이 단기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신용정보회사(Credit Information Corp.)가 2008년 10월 설립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2009년 말에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음. 동사가 설립될 경우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더 용이하게 차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8) 텀론(term loan) : 1년 내지 10년의 중장기로 이루어지는 기업대출로 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이용됨.

9) 유니버설은행(universal bank) : 백화점은행이라고도 하며, 예금, 대출 등 은행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신탁, 리스, 팩토링, 보험, 할부금융, 투자신탁까지 모든 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을 가리킴.

- 자산 순위로 대형 국내은행들은 Banco de Oro Unibank(2007년 9월 Equitable-PCI Bank 인수), Metropolitan Bank and Trust, Bank of the Philippine Islands(BPI), 필리핀 토지은행(국영) 등임.
- 그 외 Philippine National Bank, 필리핀 개발은행(국영), Rizal Commercial Banking, China Banking Corp. 등이 있음.
- 필리핀 소재 대형 외국 금융기관들로는 Citibank(미국), HSBC(홍콩), Standard Chartered(영국), Deutsche Bank(독일) 및 Mizuho Corporate Bank(일본) 등이 있음.
- 은행대출 이외에 단기자금으로는 어음매입한도 또는 당좌대월, 무역어음할인, 수출인수어음, 외상매출, 매출채권금융 등이 있음. UCPB Factors and Finance, BDO Leasing and Finance, Mercator Finance, 필리핀 토지은행 등이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단기금융시장은 은행간 콜론,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채무증서, 재무부의 장단기채권, 은행 및 유사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 환매약정 및 기업어음 등으로 구성됨.
- 은행과 유사은행들은 상기 업무들을 모두 취급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기타 투자자들은 은행간 콜론만 제외하고 모두 취급하고 있음. 단기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합법적인 은행 및 투자은행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소 3년 이상 영업을 해온 기업은 이사회 및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받아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Standard & Poor's의 현지 계열회사인 Philippine Ratings Service (Philratings)가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94년 필리핀 중앙은행이 거주기업의 모든 외채에 대한 보고요건과 일부 외채 차입에 대한 승인요건을 다시 부과하였으나, 단기자금을 목적으로 대외채무를 이용하는 것은 자유화되어 왔음. 대외채무보증은 우선 지역의 사업 및 산업에 대해서만 허가됨.

(3) 중장기자금

-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은 자본적 장비의 구입, 사업 개발, 설비의 확장 또는 현대화를 위하여 2~7년 만기, 변동 또는 고정금리로 중장기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국내 및 외국 채권자들의 협조용자가 대기업, 특히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 국영 필리핀 개발은행 및 필리핀 토지은행은 농업 및 산업에 대해 중장기대출을 지원해주는 주요 기관임. 동 은행들은 정부의 개발 계획에 적합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은행, 저축은행 및 농업은행 앞으로 전대자금을 공급함.
- 또한 두 은행 모두 외국 정부, 세계은행 및 일본국제협력은행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BIC) 등 다국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양허성 대출의 전대은행 역할을 하고 있음.

- 필리핀 개발은행은 산업보증대출기금(Industrial Guarantee Loan Fund)으로 민간기업 앞으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업은행, 저축은행, 농업은행 등에 중장기 전대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이 기금은 상업적인 규모로 생산품의 제조 및 가공, 제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등에 종사하는 적격의 가내공업과 중소기업 앞으로 제공되며, 차주는 자금조달 전에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최대 4,000만 페소의 자산규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동 자금은 공장부지 구입(토지비용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최대 25%), 공장 건설, 기계 및 장비 구입, 영구적인 운영자본에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물류개발 프로그램(Sustainable Logistics Development Program)에 따라, 필리핀 개발은행은 탱커선 구입, 조선소 건설, 일반화물, 해양 교육 및 항구 개발과 관련된 사업 등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 필리핀 개발은행은 제조업, 공공사업, 농공업, 지역사회 개발, 환경 보호, 소액금융, 공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제공하기도 함. 그러나 이 경우 차주기업은 내국인이 최소 70%의 지분을 소유하여야 함.
- 필리핀 토지은행은 중소수출업체 앞 특별금융지원(SFA-SMEX)을 담당하고 있는데, 동 자금의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최소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300만~1억 페소 가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대출금액은 차주당 50만~500만 페소임.

- 필리핀 토지은행은 또한 농촌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및 협동조합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 2003년 1월 필리핀 정부는 국가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통합대출 기회(SME Unified Lending Opportunities for National Growth: SULONG)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대출이자율 9~12.75%, 대출기간 3~5년 이내의 조건으로 중소기업에게 500만 페소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것임.
- 필리핀 개발은행, 필리핀 토지은행, Quedan and Rural Credit Guarantee Corp.(농업부의 신용부문), 국가생계지원 기금(National Livelihood Support Fund), 필리핀 수출입 신용국(Philexim), 사회보장제도(SSS), 소기업공사(상공부 산하) 등 7개의 정부 금융기관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대규모 민간 투자은행들도 종종 대출금 신디케이션을 통해 중장기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산업용 건물을 위한 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 민간 개발은행, 저축은행, 일부 농촌은행들도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들임.
- 세계은행의 민간부문인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 IFC)가 필리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에게도 점차 중요한 대출기관이 되어가고 있음. 국제금융공사는 특별 사업, 특히 인프라 사업에 대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지분을 취득할 수 있음.
- 2008년 세계 증권시장에서 대량 매물로 인한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필리핀의 증권거래소에서도 주식공모 건수가 급감하였음. 또한 필리핀 주식시장(PSE)의 상장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어서 필리핀 기업들도 해외 상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음.

- 국내채권시장은 은행대출 및 주식 부문과 비교하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풍부한 국내 유동성 덕분에 2008년과 2009년 초에는 약간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음. 한편, 2008년 하반기 이후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국제채 발행이 감소하였음.
- 채권시장은 주로 재무국(Bureau of Treasury)의 국채 발행과 우량 현지기업의 장기기업어음(Long-Term Commercial Paper: LTCP) 발행으로 구성됨. 몇 가지 요인들이 회사채 발행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회사법’에서 주주의 2/3가 채권 발행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일부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 대신 이사회 승인만 필요한 장기기업어음 발행으로 전환하고 있음.
- 금융리스도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약 2%의 기업들만이 이용하고 있음¹⁰⁾. 많은 리스금융회사들이 대형 상업은행의 계열회사이며, 리스거래의 약 60~70%가 공공버스, 호텔이동차, 소형 유통운반차, 소형 화물자동차 및 민간택시 등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음.

라. 조세제도

(1) 법인세

□ 개요

- 필리핀의 조세부담은 보통 수준으로 수출기업과 필리핀 정부의 연간 투자우선계획(IPP)에 포함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적격 외국

10) 인접 국가들에서는 평균 약 8~10%의 기업들이 금융리스를 이용하고 있음.

인투자자들은 조세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음.

— 2002년 이후 거액 납세자들은 온라인 또는 인가 상업은행의 웹사이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기업들은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의 이용허가 취득, 세금환급 및 세금공제 수혜, 세무조사 수감, 부동산 양도허가 취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복잡한 조세규정들로 인해 기업들은 특별 준법감시직원(extra compliance staff) 및 외부 컨설턴트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필리핀의 주요 조세징수기관인 국세청(BIR)과 관세청(BOC)의 부정부패가 개인 및 법인 소득세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정부패는 보통 국세청 조사관의 세무조사 중에 발생하는데, 수감기업이 세금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일부 국세청 조사관들은 뇌물을 받고 세액을 낮게 산정해 주고 있음.

·국세청과 관세청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리핀 정부가 노력해 왔으나,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그쳤음.

— 세입 증가를 위한 조치로서 국세청은 2005년 1월 ‘무감사 프로그램(no-audit program)’을 도입하여 불량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동 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전년대비 25% 더 많이 납부한 납세자들에게는 국세청의 일상적인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은 2010년까지 운영될 예정임.

- 필리핀의 주요 소득세 관련법들은 1998년 1월 1일 발효된 1997년 ‘조세개혁법’과 2005년 11월 1일 발효된 ‘공화국법 제9337호’ 등 관련 개정법들임. ‘조세개혁법’은 소득세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세법 준수를 장려하고, 조세 사기 및 탈세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권한을 강화하였음.
- ‘공화국법 제9337호’에는 필리핀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적자 축소 노력이 반영되어, 법인소득세율의 일시적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동법에 따라 2006년 2월 1일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
-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발효된 ‘공화국법 제9238호’에 따라, 금융기관은 부가가치세 대신에 총수입세(gross-receipts tax)를 납부하여야 함.
- 2004년 4월에 제정된 ‘공화국법 제9294호’는 Offshore Banking Unit(OBU) 및 FCDU의 총수입세, 서류인지세, 15%의 지점 이익송금세를 다시 면제시켰음. 그러나 OBU와 FCDU는 역내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과세 목적으로 기업들은 국내 거주기업, 거주 외국기업, 비거주기업으로 구분됨.

□ 법인세율

- 2009년 1월 1일부터 국내기업들은 필리핀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받음. 지점 포함 거주 외국기업들은 이전 과세연도에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30%의 세율을 적용받음. 비거주 외국기업들의 세율은 필리핀에서 각 과세연도에 수령한 총소득의 30%임.

- 영업활동을 개시한 해에서 4번째 과세연도부터는 거주 외국 또는 국내기업에게 총소득에 대한 2%의 최저 법인소득세(Minimum Corporate Income Tax: MCIT)가 적용됨. 해당기업의 과세소득이 0 또는 마이너스이거나 최저 법인소득세가 해당기업이 납부해야 할 정상적인 소득세보다 큰 경우 최저 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정상적인 소득세를 초과하는 최저 법인소득세 부분은 이월되어 다음 3과세연도의 정상적인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 장기 노동분쟁, 자연재해 및 타당한 사업실패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부 장관이 최저 법인소득세를 유예시킬 수 있음.

- ‘조세개혁법’에 따라, 부가급부가 무역, 사업 또는 직업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 국내외 거주기업들은 간부급 직원들에게 제공한 부가급부의 공제전 금전적 가치에 대해 32%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부가급부의 공제전 금전적 가치는 부가급부의 실제 금전적 가치를 68%로 나눔으로써 결정됨.

- 또한 ‘조세개혁법’에 따라, 국제운송업 및 OBU 등과 같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해왔음.

· 국제운송업은 필리핀 청구 총액에 대해 2.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OBU는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면세이나 거주자 앞 외화 대출에서 발생한 역내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이 부과됨.

— ‘조세개혁법’에 따라,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세후이익에 대해서 15%의 지점 이익송금세가 적용됨.

<표 IV-4> 법인세 계산 예시(2009년 기준)^{주1)}

단위 : 페소

구 분	금 액
당기순이익 (재무제표)	2,000,000
가 산 :	
• 이자비용 ^{주2)}	37,000
• 회사 대표이사의 보험료	45,000
• 대손충당금	35,000
• 재고자산감모손실	40,000
• 외화환산손실	20,000
• 첫 3분기 동안 납부한 소득세	200,000
비공제비용 합계	377,000
차 감 :	
• 결정세 적용 소득, 면세소득 및 기타 세금공제가능 비용 (국내 페소화예금의 이자소득 등)	(150,000)
• 국내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10,000)
• 대손상각비	(15,000)
• 외환차손	(5,000)
공제가능 비용 및 소득 합계	(180,000)
순과세소득	2,197,000
세 액 (세율 30%)	659,100
첫 3분기 동안 납부한 소득세 차감	(200,000)
미지급법인세 ^{주3)}	459,100

주1 : 필리핀 국내기업 및 거주 외국기업에 적용됨.

주2 : 이자비용(100,000페소)에서 이자소득(150,000페소)의 42%를 차감한 금액
(100,000페소 - (150,000페소 × 42%))

주3 : 최저 법인소득세는 총소득(2,000,000페소)의 2%인 40,000페소로서 정상적인 소득세가 최저 법인소득세보다 큼.

자료 : PricewaterhouseCoopers Philippines/Isla Lipana & Co.

□ 과세소득

- 외국기업들은 필리핀 내의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거주기업(현지 또는 외국)들은 ‘과세소득’(총소득에서 허용되는 공제 차감)에 대해, 비거주 외국기업들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 과세소득 계산시 외국기업은 총소득에서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가능 비용들은 지급이자, 세금(단, 필리핀 소득세, 외국 납부 소득세, 유산세 및 증여세 등 제외),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유정 및 천연가스정, 광산의 감모상각비, 기부금 등(단, 과세소득의 5% 미만), 연구개발비, 근로자를 위한 연금신탁 등임.
- 기업들은 국세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접대비에 대해 합리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접대비는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공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대출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도 소득공제가 허용되나, 2009년 1월 1일부터 허용되는 공제금액이 세금이 부과되는 이자소득의 33% 만큼 축소되었음.
- 2008년 8월에 제정된 ‘공화국법 제9505호’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의 퇴직급여계정에 대한 분담금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으로 국세청이 시행규칙과 규정들을 마련한 후 발효될 예정임.
- 2008년 7월에 발효된 ‘공화국법 제9504호’에 따라, 기업들(비거주 외국기업 제외)은 허용 가능 공제 대신 총소득의 40%의 운영

표준공제(Operational Standard Deduction: OSD)를 선택할 수 있음. 운영표준공제는 신고서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연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운영표준공제 신고를 한 과세연도에는 다른 공제로 변경할 수 없음.

· 운영표준공제를 선택한 기업들은 세금신고서와 함께 재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감가상각

- 외국기업들은 필리핀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허용되며, 세금 목적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내국세 감독관의 추천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기타 방법 등이 있음. 조세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자체적인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수도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따라 다른 감가상각법이 인정되고 있으나, 정액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임. 기업이 감가상각률 채택시 일부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 합의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률을 변경할 수 있음.
- 석유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서비스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이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이루어짐. 석유 생산에 사용되는 영업자산의 내용연수는 내국세 감독관의 단축 결정이 없는 경우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석유 생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예상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함.

- 석유 이외의 광업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예상연수가 10년까지인 경우에는 보통 감가상각률로, 예상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과 예상내용연수 사이의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됨. 계약자는 감가상각기간이 시작될 때 사용할 감가상각률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함.

□ 납세기한

- 기업은 소득세 신고서를 역년(1월 1일~12월 31일) 또는 자체 과세연도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법인소득세는 과세연도 1~3분기의 각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전 역년 또는 회계연도의 총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 소득세 신고서는 과세연도 마감일로부터 4번째 달의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함¹¹⁾.
 - 소득세 연체시에는 납부할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 20%의 이자가 납부일로부터 완납일까지 미납금액에 부과됨.
- 2000년 이후 필리핀의 최대 납세자들은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해 왔는데, 해당기업은 국세청의 전자신고납부 시스템(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 EFPS)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동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 대표가 신고서 제출 담당직원 2명을 임명하는 증명서가 요구됨.
 - 또한 세금을 컴퓨터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11) 예를 들어, 과세연도 마감일이 12월 31일인 경우 최종 소득세 신고서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함.

인가 상업은행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의 전자 신고 및 세금 납부는 필리핀의 10,000개 최대 법인납세자들에게 의무사항임.

□ 자본세

- 명목적인 인지세를 제외하고 자본에 대한 국세는 없으나, 지방정부가 토지, 건물, 기계 및 기타 개량에 대해 부동산세를 부과함. 메트로 마닐라 시당국은 변동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평가액의 2%를 초과하지는 않음.
- 투자위원회(BOI),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 수빅만 자유무역항 및 클라크 특별경제지대 등과 같은 특별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기업들은 부동산세를 제외하고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음.

□ 자본이득

- ‘조세개혁법’에 따르면, 순자본이득은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서 발생한 이득이 손실을 초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을 상쇄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공제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매각에서 발생한 순자본이득에 대해서 100,000페소 이하는 5%, 100,000페소를 초과하는 금액은 10%의 세율이 적용됨. 상장주식의 매각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총 매도가의 0.5%로 거래세가 적용됨.
- 비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되는 토지 및 건물의 매각, 교환 또는 처분시 추정이득에 대해 6%의 세금이 부과되며, 해당 부동산의 가

격은 총 매각가격 또는 공정시장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됨.

- 자본이득은 부동산의 매각 및 처분시 수령금액(할부이자 제외) 또는 부동산의 공정시장가격 중에서 높은 금액이 발생한 손실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됨.

— 주식거래세는 기업공개(IPO)시 적용되며, ‘조세개혁법’에 따라 다음의 누진 세율표가 적용됨.

- 공모금액이 총 발행주식의 25% 이하인 경우 4%
- 공모금액이 총 발행주식의 25% 초과, 33.33% 이하인 경우 2%
- 공모금액이 총 발행주식의 33.33%를 초과하는 경우 1%

— 해당 공모거래의 중개인은 매도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거래일로부터 5은행영업일 이내에 국세청에 송금하고 증권거래담당관 (secretary of stock exchange) 앞으로 주간신고서(weekly 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함.

- 기업공개인 경우 해당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배당세

— 배당은 세후 법인소득에서 지급되며, 배당은 이미 법인소득으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국내법인으로부터 거주 외국법인이 배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배당세가 면제됨.

— 그러나 비거주 외국법인이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이것은 비거주기업의 소재국이 필리핀에서

납부될 것으로 간주하여 15%(배당세 15%와 보통 소득세 30% 간의 차이)의 세율로 세금공제를 허용할 경우에만 적용됨.

□ 이자세

- 필리핀에서 이자소득은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1986년 8월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외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기업들 모두에게 단일적으로 2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됨.
- ‘조세개혁법’에 따라, 확대외환예금시스템(expanded foreign-currency deposit system)에서 거주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7.5%가 과세됨.

□ 로열티 및 수수료

- 거주 외국인기업에게 지급된 로열티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며, ‘조세개혁법’에 따라 로열티 지급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됨.
- 비거주 외국인기업 앞 로열티는 총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기업 앞으로 지급되는 로열티는 총지급금액의 35%로 소득세가 부과됨.
-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비거주 외국인기업은 필리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로열티에 대해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며, 필리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0%의 세금이 로열티에 적용됨. 필리핀 납세자가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송금함.

- 특허, 상표, 서비스마크 또는 저작권의 매각 또는 임대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실시되는 지역에 상관없이 12%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공화국법 제9337호’에서 작가 자신이 예술품, 저작물 및 음악작품 등을 판매할 경우 제공했던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을 폐지하였음.
- 로열티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판매자가 비거주 외국기업인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는 자가 비거주 외국기업을 대신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로열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음.

□ 이중과세방지협약

- 필리핀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2009년 기준 37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국세청의 국제세무부(International Tax Affairs Division) 앞으로 조세협약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제세무부는 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세협약감면 신청서는 배당, 로열티 등을 지급하기 15일 전에 보완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국세청이 조세협약의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음.
- 필리핀에서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미국 기업과 국세청 간에 고정사업장, 사업이익 및 로열티 등의 해석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바 있음.
- 필리핀 기업이 미국 기업 앞으로 지급한 로열티에 대한 특혜 원

천징수세율의 적용 문제 등 다수의 분쟁들이 미국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음.

— 한·필리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음.

- 지점의 이익송금 : 송금액의 10%
- 배 당 : 배당금 수령회사가 배당금 지급회사의 자본금을 최소 25% 이상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25%
- 이 자 : 공모 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0%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자총액의 15%
- 로열티 :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업이 필리핀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우선 개척지위 투자부문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로열티 총액의 10%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로열티 총액의 15%

□ 본·지사간 수수료

— 본사 비용의 일부가 필리핀 지점에 부과되어 해당 비용이 필리핀 지사의 영업에 적절하고 관련이 있다고 증명되면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음. 해당 기업은 전체 총소득 대비 필리핀 내 총소득의 비율 또는 총 순매출액 대비 필리핀 내 순매출액의 비율에 근거하여 수수료 공제액을 배분하여야 함.

· 다른 수수료의 배분방식은 내국세 감독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독립 회계감사자가 수수료 공제액 계산방식에 대한 주장을 증명하여야 함.

— 일부 지사의 순손실, 소득세 납부액, 일부 지사에 직접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자본적 지출 및 비용은 필리핀 지사에 비례 배분되지 않을 수 있음.

□ 거래세, 영업세 및 특별소비세

—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12%로 연간 총 매출액이 150만 페소를 초과하는 모든 제조업자, 생산업자, 무역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됨. 부가가치세는 사업용이든 다른 용도로든 상품을 수입하는 자에게도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은 매달 징수됨.

— 1996년 1월 1일 시행된 ‘특별부가가치세(Expanded VAT: E-VAT)법’은 이전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호텔, 음식점, 연회업체, 증권업자, 통신, 운송 및 보험회사의 서비스 매출, 부동산과 특허, 저작권, 상표, 서비스마크와 같은 무형자산의 매각 또는 리스까지 확대시켰음.

— ‘공화국법 제9337호’는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를 더욱 확대하여 석탄, 석유제품, 전력, 전기협동조합(electricity co-operatives)의 매출, 항공 및 선박에 의한 국내 승객 운송, 전문직의 의료 및 법률 서비스, 비식품 농산물, 예술품도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게 되었음.

—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연간 총매출이 150만 페소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대신 3%의 세금을 적용 받음.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기업도 ① 다음 판매 또는 거래에서 매번 신용거래를 통해 미납세액이 감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② 수출상품 생산용 원료, 공급품, 자본재 및 서비스 구입 이용을 위해 납부한 모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규정에 따라 외화로 지급된 경우, 상품 수출과 수출용 상품 가공, 제조 및 재포장과 관련된 서비스의 매출에 대해서 특혜 영세율이 적용됨.

· 계약자 및 하도급자가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수출기업 앞으로 제공하는 원료 및 서비스의 매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제해운 및 항공수송에 종사하는 기업 앞으로 판매되는 상품, 장비 및 연료도 영세율을 적용받음.

— 다음의 거래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원래 상태로 농수산 식품의 판매 또는 수입

· 비료, 종자, 치어, 가금류 사료 및 그 원료의 판매

· 필리핀에 재정착하는 귀국 거주자 및 비거주 시민의 소지품 및 가재도구의 수입

· 쌀, 옥수수 및 설탕의 농업계약 재배자 및 제분업자의 서비스

- 전문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의료, 치과, 병원 및 수의 서비스
 - 시설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 고용주-고용인의 관계에 따라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 다국적 회사의 지역본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 특별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른 면세 거래
 - 전기협동조합을 제외한 농업, 신용 또는 기타 협동조합의 판매
 - 정부에 등록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활동에서 받은 총수입
 -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지 않은 자의 수출
 - 150만 달러 미만으로 평가된 주택용지 및 250만 페소 미만으로 평가된 주택의 매각
 - 월세 10,000페소 미만의 주택의 임대
 - 대부분의 책, 신문 및 잡지의 인쇄, 발행 및 판매
 - 여객선, 화물선 및 항공기의 수입, 판매 또는 임대
 - 국제해운 또는 항공수송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연료, 상품 및 공급품의 수입
 - 은행 및 비은행 금융중개업자의 서비스
- 은행과 유사 은행업 기능을 하는 기타 금융중개업자는 1~7%의 총수입세(Gross Receipts Tax: GRT)를 적용받음. 예를 들면, 만기가 5년 이하인 경우 대출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수입세는 5%, 만기가 더 장기인 경우 총수입세는 1%임.

- 그러나 은행 자회사의 배당, 지분 분배 및 순이익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환, 채권, 파생상품 및 기타 유사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의 순거래소득에 대한 총수입세는 5%에서 7%로 인상되었음.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상품(자산 또는 서비스)의 구매자, 양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이동 및 양도되어, 이들이 상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매출부가세)가 이들의 부채로 기입됨.
 - 매입부가세 공제액이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회사는 매출부가세의 70%까지 매입부가세 공제를 요구할 수 있음.
- 특별소비세는 포도주 및 증류주, 맥주, 켈런 및 담배제품, 윤활유 및 기름(유사 조제품 및 첨가제 포함), 가공 처리된 가스, 왁스, 변성 알코올, 영화필름, 사카린, 석탄 및 코크스, 자동차, 비필수적인 상품(보석, 요트 및 기타 유람선), 광산물, 나프타 및 기타 유사 증류상품, 아스팔트, 석유 및 기타 연료제품 등에 적용됨.
 - 1996년에 통과된 ‘공화국법 제8184호’는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동년에 승인된 ‘공화국법 제8240호’는 증류주, 포도주, 맥주 및 기타 발효주, 시가 및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개혁하였음. 2004년 12월에 제정된 ‘공화국법 제9334호’는 담배 및 알코올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더욱 인상하였음.
 - ‘공화국법 제9337호’는 부가가치세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나프타 및 보통 휘발유, 등유, 디젤 연료유 및 병커 연료유를 포함하여 일부 석유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축소하였고, 현지에서 추출된 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였음.

□ 기타 세금

- 주권, 채권 및 채무증서, 판매계약서, 은행어음, 환어음, 신용장, 보험증권, 선하증권, 임대계약서, 저당권증서, 용선계약서, 창고증권과 같은 법률 문서에는 서류의 액면금액에 근거한 서류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DST)가 적용됨.
 - 서류에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서류가 무효화되지는 않으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은 서류는 인지세가 납부될 때까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2004년 2월 ‘공화국법 제9243호’에 따라, 파생상품, 기한이 없는 은행 예금계좌를 포함한 일부 상품과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파생적인 거래에 대한 인지세는 폐지되었으며, 주권의 최초 발행과 연금 등 보험료에 대한 인지세는 인하하였음.
- 2004년 ‘증권화법(Securitization Act)¹²⁾’에 따라, 교환 거래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5년 동안 서류인지세가 면제 되도록 하였으나, 1년 이상의 채무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인상하여 중장기자금의 차입비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주요 법률 문서에 대한 서류인지세율은 다음과 같음.
 - 기업 또는 협회의 최초 주권 발행시 주권금액 200페소당 1페소 (단, 주식배당 또는 무액면주에 대해서는 실제가격에 대해 부과)
 - 매매 또는 인도각서, 또는 기타 이전 증명에 따라 기업 또는 협회의 채무증서 또는 주권 액면가격 200페소당 0.75페소

12) 공화국법 제9267호(Republic Act 9267)

- 만기가 365일 이상인 부채증서의 최초 발행시 발행가격 200페소당 1페소. 만기가 1년 이하인 부채증서의 경우 대출기간을 365일 기준으로 일수 계산하여 서류인지세 부과¹³⁾ (대출계약서 및 약속어음은 25만 페소 이하인 경우, 사업, 재판매, 물물교환 또는 임대용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주택, 부지, 자동차, 가전제품 또는 가구를 할부 구입하기 위하여 개인이 작성한 경우 서류인지세 면제)
- 환어음 또는 어음 액면가격 200페소당 0.30페소
- 회사 또는 협회의 자산 또는 축적된 재산의 권리를 나타내는 이익증서 또는 기타 서류와 이러한 증서들의 모든 이전에 대해서 200페소당 0.50페소
-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은행수표, 어음 또는 예금증서에 대해 건별 1.50페소
- 기업이나 협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대리권에 대해 15페소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 또는 리스기간 중 매년 첫 2,000페소까지는 3페소, 2,000페소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페소당 추가 1페소
- 신용장 및 외국환어음의 액면가격에 대해 200페소당 0.30페소
- 보험서류에 대한 서류인지세율은 ① 생명보험은 보험료 금액 200페소당 0.50페소, ② 부동산보험, 신용보증 및 기타 비생명 보험

13) 부채증서에는 회사채, 채무증서, 채권, 대출계약서, 정부 발행 유가증권, 약속어음 및 담보 부채증서 등이 포함됨.

증권은 보험료 금액 4페소당 0.50페소, ③ 연금은 200페소당 0.50페소, ④ 손해보상은 보험료 금액 4페소당 0.30페소 등임.

— 지방정부는 부동산세 이외에 관할지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은 변동되나 보통 연간 총매출액에 대해 부과됨.

— OBU의 대출금에 대해 현지 기업 및 특정 기업이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1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됨.

— 1,620페소의 항공여행세(airline travel tax)가 ① 모든 필리핀 국민, ② 외국인 영주권자, ③ 1년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는 비이민 외국인에게 적용됨. 노동고용부(DOLE)의 정식 증명을 받은 고용계약서를 가진 해외 필리핀 계약근로자들에게는 동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음.

· 어린이(2~12세)와 국가경제개발청(NEDA) 또는 대통령이 증명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보조금을 수령한 자에게는 810페소의 인하된 세액이 적용됨.

— 필리핀에서 전화, 전신, 텔렉스, 무선 전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든 통신에 대해 10%의 세금이 적용됨.

(2) 개인소득세

□ 개요

— 필리핀의 개인 조세부담은 다른 ASEAN 회원국들에 비해서 양호한 편으로 과세 개인소득은 모든 소득에서 허용 가능한 공제와 인

적 공제를 제한 것임.

- 소득에는 보상, 사업소득, 부동산 매각 및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 이자, 임대료, 로열티, 배당, 연금, 상품 및 상금, 연금 및 일반 전문 합자회사(general professional partnership)의 순소득에서 분배받은 파트너의 지분 등이 포함되며, 납세자는 외국 소득세 납부액의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모든 개인소득세는 4월 15일까지 납부되어야 하고, 납부할 금액이 2,000페소를 초과하는 경우 2회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나, 소득세 신고시점에는 납부가 되어야 함.
- 필리핀 사업장에서만 모든 소득을 얻는 외국 고용인은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득세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함.
- 연간 소득이 72만 페소 이상인 전문직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04년 1월 1일 10%에서 15%로 인상되었으며, 연간 소득이 72만 페소 미만인 전문직들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음.
 - 전문직에는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 해사 검정인, 전문 감정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배우, 가수 및 사회자, 라디오 및 TV 방송인, 안무가, 음악, 영화, 라디오, TV 감독 및 연출가 등이 포함됨.
 - ‘공화국법 제9337호’에 따라, 2005년 11월 이후 자영 개인 전문직에게 지불되는 수수료에 대해 12%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음.

- ‘공화국법 제9504호’는 최저임금 소득자에게 소득세 납부 및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주었으며, 인적공제 또는 개인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공제를 확대하였음.
- ‘조세개혁법’은 보상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득세 시스템을 간소화하였으며, 소득세 계층의 수를 10개에서 7개로 축소시켰음.

□ 거 주

- 소득세 목적으로 외국인들은 필리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비거주자는 다시 ① 무역 또는 사업 종사자, ② 무역 또는 사업 비종사자, ③ 지역본부, OBU 또는 석유사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에 의해 고용된 자로 분류됨.
- 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 확정 계획된 체류기간이 없으나, 단기 체류객 또는 일시 체류자가 아닌 외국인이므로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됨.
-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실제로 사업 종사 여부에 상관없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됨. 반대로, 180일 이하 체류한 외국인은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더 가벼운 조세부담을 지게 됨.
- ‘조세개혁법’에 따라, 필리핀 내의 무역 및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25%의 특별세율이 적용되나, 개인공제를 받을 자격은 없음.

- 다국적 회사의 지역본부, OBU 또는 석유사업에 종사하는 서비스 계약자 및 하도급자에게 고용된 외국인들에게는 15%의 특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개인공제를 받을 수는 없음.

□ 과세소득

- 거주 필리핀 국민은 필리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고,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조세협약을 적용받을 수도 있음.
- 필리핀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총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데 반해, 필리핀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들은 과세소득에 대해서 과세됨.
 - 과세소득은 소득지급금, 수수료, 급료, 임금, 수수료, 무역, 사업 또는 직업의 수행에서 발생한 총소득,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이자소득, 임대료, 로열티, 배당, 연금, 상품 및 상금, 연금, 일반 전문 합자회사(general professional partnership)의 순소득에서 분배받은 파트너의 지분 등에서 허용 가능한 공제와 인적공제를 제한 것임.
 - 생명보험의 수익금 및 30,000페소 미만의 13월 급여(보너스)는 과세소득 계산에서 제외됨.
- ‘공화국법 제9504호’는 거주자(필리핀 국민 및 외국인 모두)에 대한 개인공제를 50,000페소로 균일하게 인상하였음. 변경 전의 개인공제는 미혼자는 20,000페소, 가장 및 기혼자는 32,000페소였음.

- 부양가족이 4명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부양가족 1인당 8,000페소에서 25,000페소로 추가 공제를 인상하였음. 단, 부양자녀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음.
- 사업 또는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개인(비거주 외국인 제외)에 대한 운영표준공제(OSD)는 총 매출액 또는 수령액의 10%에서 40%로 늘렸으며, 개인 납세자는 운영표준공제 대신에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허용 가능한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음.
- 운영표준공제를 신청할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연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음. 운영표준공제를 선택한 개인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총매출액 또는 수령액의 기록은 유지하여야 함.
-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비거주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당 국가가 필리핀 국민에게 부여하는 공제액과 동일한 개인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필리핀 세법에 따라 비거주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해당 국가가 필리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제액을 넘을 수 없음.
- ‘공화국법 제9505호’ 따라, 연금기금, 뮤추얼 펀드, 단위투자신탁,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과 같은 개인퇴직금적립계정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개인당 연간 최대 10만 페소까지 허용할 계획이었음.
- 개인 거주자(내국인 또는 외국인)와 비거주 외국인의 폐소화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비거주자를 제외한 개인의 미달러화 은행예금의 이자소득에는 7.5%의 세율이 적용됨.

-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5번째 연도 이전에 조기 해지하지 않는 경우, 장기예금 및 투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폐지하였음.
- 거주 및 비거주 외국인은 로열티(단, 10%의 세금이 부과되는 서적, 문학작품 및 작곡은 제외)에 대해 20%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0,000페소 이상의 상품 및 상금(국영복권 상금 제외)에 대해서도 2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국내기업, 보험 또는 단위신탁(뮤추얼 펀드)회사 및 다국적 회사의 지역 영업본부로부터 거주 외국인이 수령한 현금 및 자산배당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되고,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20%의 세금이 부과됨.
- 개인의 자본이득에는 부동산 또는 주식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처분에서 발생한 이익 등이 포함되며, 주식 거래이익에 대해 주식의 총 매도가격의 0.5%로 과세되고 세금은 주식중개인이 원천징수함.
- ‘조세개혁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이익은 순자본이득의 100,000페소까지는 5%, 100,000페소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됨. 부동산의 매각이익은 매각일의 총 매도가격 또는 공정시장가격 중 높은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함.
- 무역, 사업 또는 직업 소득을 가진 개인의 자본이득 또는 결정세(final tax)를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 개인에 의해 발생한 자본손실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 손실한도 규정에 따라,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의 범위까지만 공제 가능
- 손실한도 규정으로 인하여 공제할 수 없는 순자본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단, 그 이후에는 불가)의 금액한도에 따라 자본이익에서 공제 가능
- 보유기간 규정에 따라, 자산 보유기간이 12개월을 넘는 경우 자본이득 또는 자본손실의 50%만 인식되며, 12개월 이하인 경우 자본이득 또는 손실의 100% 인식

□ 개인소득세율

<표 IV-5> 과세소득별 개인소득세 납세액(2009년 말 기준)

단위 : 페소

과세소득	납 세 액	과세소득	납 세 액
10,000 이하	0	140,001~250,000	22,500+140,000 초과액의 25%
10,001~30,000	500+10,000 초과액의 10%	250,001~500,000	50,000+250,000 초과액의 30%
30,001~70,000	2,500+30,000 초과액의 15%	500,001 이상	125,000+500,000 초과액의 32%
70,001~140,000	8,500+70,000 초과액의 20%		

주 : 거주자(거주 외국인 포함)에게 적용

자료 : Bureau of Internal Revenue

— 거주자(거주 외국인 포함)는 <표 IV-5>의 과세소득별 세율에 따라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 지방정부는 소득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음.

주요 개인소득세율

- 거주 외국인이 수령한 이자소득 및 로열티 : 20% (단, 달러화 예금 이자는 7.5%)
- 배당 : 10%
- 주식 거래에 따른 자본이득 : 비상장주식은 순자본이득의 100,000 페소 이하는 5%, 100,000페소를 초과하는 금액은 10% (단, 상장주식의 매각은 총 매도가의 0.5%로 거래세 적용)
- 부동산 매각 : 매각시점의 총 매도가격 또는 공정시장가격 중 높은 금액의 6%
- 지역본부, OBU 및 석유계약자의 고용인 : 총 보상의 15%
- 필리핀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비거주 외국인 : 필리핀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거주 외국인과 동일 세율(<표 IV-5> 참조)
- 필리핀 내에서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 : 필리핀에서 발생한 총소득에 대해 25%

□ 자본세

— 개인은 필리핀 소재기업과 동일한 자본세를 납부하여야 함.

<표 IV-6> 개인소득세 계산 예시(2009년 기준)

단위 : 페소

구 분	사례 1	사례 2
총소득	2,400,000	4,320,000
공제액 :		
• 기혼개인공제	(50,000)	(50,000)
• 자녀공제	(50,000)	(50,000)
총 공제액	(100,000)	(100,000)
과세소득	2,300,000	4,220,000
소득세 (세율은 <표 IV-5> 참조)	701,000	1,315,400
조세부담 (총소득 대비)	29.2%	30.4%

주 : 1명의 부양배우자 및 2명의 미성년자녀를 가진 기혼 거주납세자가 약 50,000달러 (2,400,000페소) 및 90,000달러(4,320,000페소)의 소득을 벌어들인 경우 2009년 조세부담을 계산한 예시임(환율 48페소/US\$1 적용).

자료 : Bureau of Internal Revenue 및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alculations

마. 노동제도

(1) 개 요

- 필리핀 통계청(NSO)에 따르면, 2008년 3분기 필리핀 노동인구는 총 3,710만 명으로 이 중 93.2%가 고용으로 분류되어 전국 실업률은 약 6.8%로 전년도 6.3%에 비해 다소 높아졌음.
- 실업률은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 또는 메트로 마닐라가 12.8%로 가장 높으며,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2008년에는 경기침체로 40,000~200,000명 정도가 실직해서 실업 계층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0월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이 노동력의 거의 절반인 4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이 약 35.7%, 제조업이 14.7%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필리핀에서는 BPO, 건설 및 정보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숙련 근로자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통신 및 은행업에서는 인력 빼가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숙련 노동자들이 미국, 캐나다, 중동 및 유럽으로 지속적으로 이주함에 따라 현지의 고급 인력 공급이 감소하고 있음.
- 2007년 10~12월에 실시된 노동고용통계국(Bureau of Labor and Employment Statistic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의 최대 5,000개 기업이 주로 고급 인력 부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응답자의 39.3%가 적격 구인자의 부족을 가장 큰 인력 문제로 지적하였음.
- 구인 소식은 구두로 전파되거나 공장 출입문에 공지로 발표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용은 신문 및 기타 인쇄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의류 제조, 식품 가공 및 반도체 조립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 다국적 및 외국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직률 또는 장기결근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의 일반적인 총 급여후생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중간급 관리자 및 숙련 근로자에게는 매우 좋은 수준이고, 반숙련 및 조립 라인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저임금은 각 14개 행정지역의 임금생산성위원회(Wage and Productivity Board)가 지역별로 결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위원회가 약 1년에 한 번 정도 최저임금을 조정해왔음.

(2) 노동법

— 필리핀의 현행 노동법은 합리적인 편으로 투자자들이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1976년 2월에 발효된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 of the Philippines)’이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 관련 법률을 통합하게 되었음¹⁴⁾.

· 노동법의 주요 개정법으로는 1989년 3월에 발효된 ‘신노동관계법(New Labor Relation Law)¹⁵⁾, 1989년 5월 발효된 ‘여성차별에 대한 금지강화법(Act Strengthening Prohibition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¹⁶⁾, 1989년 7월 발효된 ‘임금합리화법(Wage Rationalization Act)¹⁷⁾ 등이 있음.

— ‘신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보호 강화, 단체 조직, 파업 및 교섭권 강화, 자발적 분쟁해결 방법 장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을 전문화하고 분쟁 당사자들에게 더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주-고용자 관계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국가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의 개편도 목표로 하였음.

14) 대통령령 제442호(Presidential Decree 442)

15) 공화국법 제6715호(Republic Act 6715)

16) 공화국법 제6725호(Republic Act 6725)

17) 공화국법 제6727호(Republic Act 6727)

— 노동법은 여성 차별을 포함한 다양한 불공정 관행들과 단체교섭 교착을 파업 및 공장 폐쇄의 근거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권의 억압은 형사 범죄임.

<표 IV-7> 필리핀의 노동력 및 임금수준

구 분	2008	2009 ^e	2010 ^f
노동시장			
노동력(만 명)	3,680	3,760	3,840
실업률(%)	7.4	8.3	8.7
노동비용			
평균 실질임금증가율(%)	-1.2	-1.4	-0.6
평균 명목임금증가율(%)	8.0	0.5	3.0
시간당 노동비용(달러)	1.10	1.00	1.00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Forecast Philippines, March 2009

(3)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대부분 제조업체에 있는데, 약 138개의 노동연맹과 동맹과 연관 없는 다수의 독립적인 공장 수준의 노동조합들을 관리하는 7개의 전국적 노동센터가 있음. 노동연맹은 단체교섭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조합이 최소 10개가 모여 설립할 수 있음.

· 최대 노동센터들은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Kilusang Mayo Uno(May 1st Movement) 및 Labor Advisory Consultative Council 등임.

- 2008년 9월 기준으로 필리핀에는 17,181개의 노동조합이 있고, 총 193만 명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노동고용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약 1,419개의 단체교섭협약이 226,00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음.
- 투명한 정부 정책, 효과적인 노동법 집행, 노사관계 개선에 힘입어 필리핀의 노동 상황은 관리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노동연맹과 노동조합들의 조직 내부와 조직간 대립도 국내 노동조합주의를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파업은 보통 불공정한 노동 관행 또는 교섭 교착에 대응하여 발생하며, 가장 흔한 불공정한 관행으로는 노동조합원의 괴롭힘, 노동조합 파괴행위, 근로기준 및 단체협약, 특히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각종 수당, 노동조합 인정의 위반 등이 있음. 이러한 위반행위들은 다국적 기업보다 필리핀 기업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해 왔음.
- 노동조합 운동은 분산되어 거의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 파업은 더욱 감소해왔음. 국가조정중재위원회(Nation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Board: NCMB)에 따르면, 파업이 2007년 6건에서 2008년 5건으로 감소하였으나,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근무일수는 2007년 12,112일에서 2008년 38,711일로 급증하였음.

(4) 임금 및 부가급부

- ‘임금합리화법(Wage Rationalization Act)’에 따라, 지역, 지방 및 산업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3자간 임금생산성

위원회를 창설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임금이 더 낮은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시골지역으로 산업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09년 2월 기본급과 생계비 수당을 포함한 일일 최저임금은 메트로 마닐라(수도권 지역)의 비농업 근로자는 382페소, 농업근로자는 345페소이며, 메트로 마닐라 외 지역에서 비농업 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은 196페소(비콜(Bicol) 지역)에서 320페소(칼라바존(Calabarzon) 지역)의 범위임.

·농업근로자는 비플랜테이션 근로자 또는 플랜테이션 근로자로 분류되는데, 메트로 마닐라 외 지역에서 플랜테이션 근로자들의 일일 최저임금은 198페소(미마로파(Mimaropa) 지역)에서 295페소(칼라바존 지역)의 범위이며, 비플랜테이션 농업근로자의 일일 최저임금은 178페소(미마로파 지역)에서 275페소(칼라바존 지역)의 범위임.

— 일부 기업들은 임금생산성위원회의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부실기업, 신규 기업, 10명 미만을 고용한 서비스 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등이 있음. 이 명령을 면제 받으려는 기업은 지역 임금생산성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면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원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함.

·‘임금합리화법’을 개정하여 제정된 ‘공화국법 제8188호’에 따르면, 동 위원회의 명령을 무시하는 고용주는 2~4년의 징역과 최소 25,000페소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해당 기업의 사장, 부사장, CEO, 부장 또는 전무이사 등의 임원 및 간부직원들도 형사 고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용주들이 동 위원회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고 처벌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가급부가 보통 고용주의 총 월급 및 임금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준 사회보장혜택에는 장애연금, 퇴직연금, 6,000페소의 장례비, 병가수당, 45일간의 출산휴가, 6,000페소까지의 산휴수당, 8,000페소까지의 여러 종류의 대출(선불, 교육 및 비상사태 용도) 등이 있음.
- 정부가 관리하는 필리핀 건강보험공단(PhilHealth)은 입원 및 기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모든 민간 및 정부부문의 고용인들은 매년 말에 제공되는 13월 급여(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1996년 ‘공화국법 제8187호’가 통과됨에 따라 민간 및 공공부문의 모든 기혼 남자 고용인들은 처음 4명의 자녀에 대해서 급여 전액과 함께 7일간의 출산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민간부문 고용인들은 단체교섭협약 또는 고용계약에서 정해진 연령에 퇴직할 수 있는데, 고용인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20년간 근무 후 퇴직할 수 있음. 정부부문에서는 65세 퇴직이 의무적이고, 60세 희망퇴직이 선호되고 있음.
- ‘퇴직금법(Retirement Pay Law)¹⁸⁾에 따라 민간부문의 고용인에 대한 퇴직금은 최소 월급의 1/2을 근무년수로 곱한 금액이며, 퇴직하는 고용인은 법에서 규정한 13월 급여(보너스)의 일부와 5

18) 공화국법 제7641호(Republic Act 7641)

일 이내의 근무장려휴가(service-incentive leave) 등을 받을 수 있음.

— 단체교섭협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용주들은 퇴직자연금제도를 주택개발뮤추얼펀드(Home Development Mutual Fund: HDMF)¹⁹⁾로 대체할 수 있는데, 고용주와 고용인은 모두 국영 Pag-IBIG 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동 기금은 회원으로 가입된 고용인에게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고용인 10명 이하의 소매, 서비스 및 농업 기업들은 퇴직수당 제공 요건을 면제받고 있음.

(5) 근무시간

— 제조업의 주당 노동시간은 보통 44~48시간으로 다른 부문에서는 40시간의 주당 노동시간이 준수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의무적임. 근로자들은 매 7일에 하루씩 휴일은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19) Pag-IBIG(Pagtutulungan sa kinabukasan: Ikaw, Bangko, Industria at Gobyerno) Fund로 알려진 기금으로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국가적인 예금상품 및 주택자금대출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978년 6월 대통령령 제1530호에 따라 설립되었음. 2009년 7월 '주택개발뮤추얼펀드법(Home Development Mutual Fund Law)'이 제정됨에 따라, ① 민간부문의 사회보장제도(SSS) 및 공공부문의 정부서비스보험제도(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GSIS)에 가입된 근로자, ② 필리핀 군대(Armed Forces of the Philippines: AFP), 소방국(Bureau of Fire Protection: BFP), 교정국(Bureau of Jail Management and Penology: BJMP), 필리핀 국립경찰(Philippine National Police: PNP) 등 제복 근무자, ③ 외국 고용주에게 고용된 필리핀 고용인은 모두 Pag-IBIG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2010년 1월 기준으로 총 757만 명이 가입되어 있음.

- 2009년 1월 노동고용부(DOLE)는 기업들이 경기둔화를 극복하고 고용을 축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탄력근로계약(flexible work agreemen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권고령 제2호(Department Advisory No. 2)’를 발표하였음.
- 동 가이드라인은 표준 주당 근무일수를 6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총 근무시간은 44~48시간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였음. 표준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으나, 초과근무 수당 없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그러나 동 조치는 6개월 이상 지속될 수 없음.
- 또한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주당 근무일수 이내에서 교대 근무조를 운용할 수 있으며, 고용인들은 자신의 휴가일수를 이용하여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휴가를 쓰도록 되어 있음. 주당 총 근무시간이 계속 유지되는 한, 교대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감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주 및 근로자들이 계약을 탄력적으로 실행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실행 전에 고용주가 소재하는 지역의 노동고용부 지역사무소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필리핀 정부는 관광업을 부양하기 위하여 ‘휴일경제(holiday economics)’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는데, 이 정책에 따라 주말을 연휴로 만들기 위하여 독립기념일 또는 노동절과 같은 정기적인 법정 공휴일을 금요일이나 월요일로 이동시켰음.

· 또한 크리스마스 또는 설날과 같은 주요 정기휴일이 목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금요일을 ‘특별 비근무일(special non-working day)’로 발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동 정책이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 최소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급여에 25%를 더한 금액이며, 휴일 또는 정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처음 8시간은 기본급의 20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0%의 시간당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들은 근무하지 않은 정기휴일 동안 정규 일당을 지급받음.

— 특별 비근무일에는 ‘무노동, 무임금 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단체교섭협약에 반대규정이 없거나 회사의 관행 또는 정책상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특별 비근무일에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특별 비근무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는 처음 8시간은 시간당 급여의 130%, 이후 근무시간에는 시간당 급여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특별 비근무일이 근로자의 휴일인 경우, 근로자는 처음 8시간은 시간당 급여의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급여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 정규 급여보다 최소 10%를 더 받을 수 있음.

<표 IV-8> 필리핀의 직종별 급여 현황(2008년 기준)

단위 : 페소

직 종	연간 기본급	연간 총 급여 ^{주)}
비숙련 생산노동자	111,570	153,805
반숙련 생산노동자	127,135	176,748
다기능 생산노동자	207,349	305,877
행정 보조	199,407	312,794
현장 감독	261,166	360,931
회 계 사	290,255	434,417
Senior executive secretary	356,165	553,204
엔지니어링 감독관	504,135	774,610

주 : 상여금, 수수료, 이윤 분배, 사회보장비용 및 복지비용(cost of benefits) 포함. 고용 주의 사회보장비용은 1명으로 가정한 것임.

자료 : Watson Wyatt Worldwide, 2008 Total Rewards Survey-Philippines

(6) 임시 고용

— ‘필리핀 노동법’에는 비상근 및 임시 고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나, 필리핀 정부가 비상근 및 임시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필리핀 통계청(NSO)에 따르면, 2008년 10월 기준으로 근로자의 63.5%가 정규직(1주일에 40시간 이상), 35.4%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불완전 고용상태임.

· 고용주들은 보통 3~6개월의 갱신 가능한 기간 동안 임시 또는 비정기적으로 임시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고용인이 계약자/하도급자 앞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노동법에서 하도급과 관련하

여 고용인, 계약자/하도급자,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노동고용부(DOLE)는 하청업체가 단지 고용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만 모집하여 제공하거나,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청업체가 상당한 자본 또는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금지하였음.

·이러한 금지조치는 고용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도록 보장하고, 재직 기간 보장 없이 비상근 근로자로 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한 해고, 고용인의 정규 근무시간 단축, 파업 중인 근로자 대체 등을 위한 하도급 계약은 금지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자들은 노동고용부에 등록하여야 함.

·3~6개월의 갱신 가능한 기간 동안 비정기적 또는 계약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서비스 산업, 특히 소매업, 식당, 심지어 수출 지대의 제조업체에서는 일반적인 관례로 소매업자들은 매 3~5개월 마다 고용인을 교체하여 단순한 부수적 고용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노동조합들은 금지된 하도급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국(Bureau of Working Conditions)은 각종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기업들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조건국은 인원 등의 제약으로 몇 개 기업들만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용인들은 규정 위반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법은 실습생 및 훈련생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습생은 최대 6개월 동안 첨단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들만 고용할 수 있음. 실습생의 고용은 노동고용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실습과정 프로그램의 후원으로만 가능하며, 학교가 훈련을 요청하는 경우 노동고용부가 보수 없이 실습생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

·실습생 및 훈련생의 급여로 현행 최저임금의 75%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후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직접적인 임금비용의 10%를 한도로 훈련비용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

(7) 고용 해지

— 노동법은 고용인의 해고 사유로 다음의 5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직무의 증대하고 습관적인 태만

·고용주, 고용주의 직계가족 또는 고용주의 정식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에 대한 범죄

·심각한 부정행위와 업무 관련 고용주의 적법한 지시의 고의적인 위반

- 근로자에 의한 사기 또는 고용주에 대한 고의적인 배임
 - 노동 절약장치의 설치, 영업손실 또는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일시 해고 또는 인원 감축
- 고용주는 고용인의 근무 종료일로부터 1달 전에 노동고용부(DOLE)에 통지를 하여야 하고, 노동 절약장치의 설치로 인해 해고되는 근로자는 매 근무년수에 대해 최소 한달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영업손실 또는 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인원 감축, 심각한 사업손실 또는 재무상 실패 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의 중단에 경우에 근로자는 매 근무년수에 대해 1/2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나 1개월분 급여 중 높은 것을 받을 수 있음.
- 신규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며, 수습기간이 지나면 고용주가 계속 고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
- 근로자들이 노동고용부의 근무 복귀 명령을 무시하더라도 경영진은 파업 중인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을 고용할 수 없음.

(8) 외국인 고용

- 국가 정책상 필리핀은 현지 기술 및 인력 자원의 이용을 선호하지만,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따라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음.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주주, 투자자, 투자은행의 대표자, 토지 및 관광 개발업자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외국인을 위한 비자 제약요건을 완화하였음.

- 외국인 기술자의 보유기술이 필리핀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일 경우, 해당 외국인 기술자는 사전에 협의된 취업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 들어올 수 있음.
- 우호조약, 통상 및 항해조약에 따라 필리핀 입국자격이 주어진 외국인은 상사주재원비자(treaty-trader visa)를 가지고 비이민자로 필리핀에 들어올 수 있음. 이 경우는 주로 필리핀과 해당 외국인의 국가 간에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고 있거나 외국인이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기업의 영업을 확대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
- 필리핀에 최소 75,000달러(관광업 투자인 경우 50,000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특별투자거주비자(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가 발급될 수 있으며, 동 비자 소지자는 투자가 유지되는 한 필리핀에서 거주할 수 있음.
- 투자위원회(BOI)의 OSAC가 특별 비이민 사전협의 취업비자, 외국인 고용 허가 및 특별투자거주비자 등을 처리하고 있음.
- 투자위원회 및 필리핀 경제지대청(PEZA)에 등록된 기업들은 5년 동안 감독, 기술 및 자문직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함. 지역본부와 수출가공지대 소재 기업의 경우 외국인 직원과 배우자, 3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비이민자 복수비자가 발급됨.
- 이들은 필리핀에서 최종적으로 출국할 때 국세청(BIR)에서 받는 납세증명을 제외하고 입국심사료, 외국인등록법, 외국인등록증 및 여타 허가 등을 면제받음.

- 2007년 8월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은 다국적 회사의 임원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비자를 도입하였는데, 이 임원들은 필리핀에 도착할 때 3개월 비자를 받고 총 3년까지 매 6개월 마다 갱신 가능함.
- 투자위원회, 필리핀 은퇴청(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필리핀 상공회의소(Philippin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현지 사업위원회, 기타 외국 사업위원회 등이 보증하는 외국인 무역업자는 필리핀에 도착할 때 3개월 비자를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은 무비자로 21일까지 필리핀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음. 임시 방문비자(temporary-visitor's visa)를 받은 사람들은 59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1년까지 연장 가능함.
 - 59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은 출입국사무국(Bureau of Immigration and Deportation)이나 메트로 마닐라 외 지역에서는 현지 시의 재무국장(municipal or city treasurer) 앞으로 등록하여야 함.
- 고용전 비자(pre-employment) 및 상사주재원비자 비자를 받은 외국인과 부양가족들은 필리핀을 떠나지 않고 영주 지위를 신청할 수 있음.